

행정사무감사 중점확인 사항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2024. 6

대 흥 동

202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동 감사 중점확인 사항

(감사대상기간: 2021.1.1.~2024.4.30.)

연번	직위	성명	중 점 확 인 사 항	페이지
1	위원장	채우진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총괄	
2	부위원장	이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등록 및 관리실태 - 장애연금, 장애수당 지급현황 - 복지카드, 고속도로할인카드, 자동차표지 교부 등 	1
3	위원	권인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뿌리복지동행센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실태 및 실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3
4	위원	김승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 지급관리 - 지급기준 및 접수실태 -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 저소득주민(독거노인 포함) 방문행정 ○ 7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 	8
5	위원	백남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SOS사업 운영 실적 ○ 긴급복지 지원실태 	11
6	위원	오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사업 운영실태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13
7	위원	장정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복지 추진실태 - 임대주택, 집수리사업, 주택 바우처 등 ○ 경로당 관리 현황 	16
8	위원	차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료,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신청·지급현황 ○ 저소득주민 이웃돕기 결연사업 ○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지원 실적 	18
9	위원	한선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진행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한부모 신청·접수 추진실태 	23

중점확인사항

(이상원 위원)

2-1. 장애인 등록 및 관리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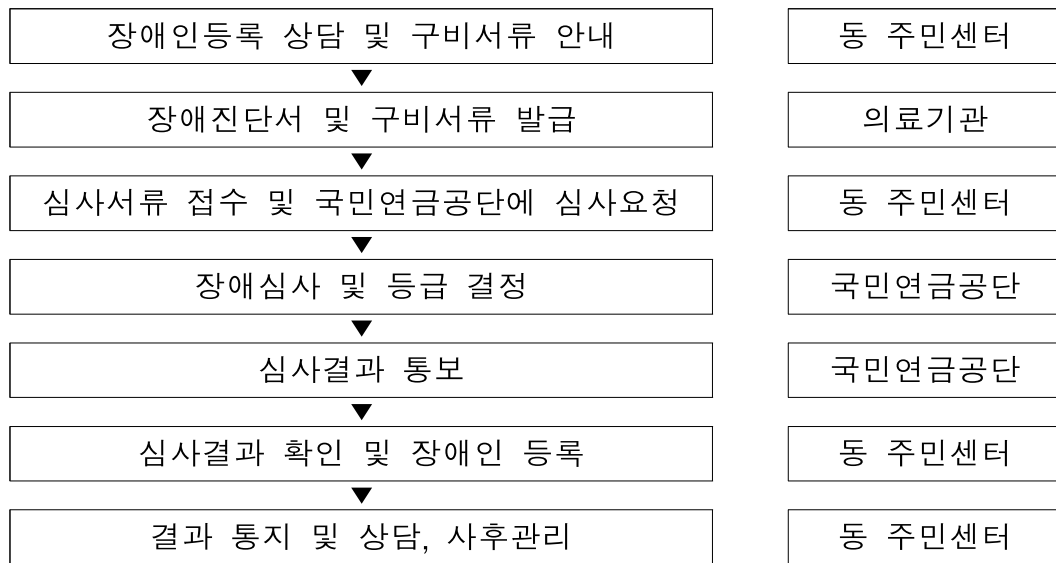
- 장애연금, 장애수당 지급현황
- 복지카드, 고속도로할인카드, 자동차표지 교부 등

2-1. 장애인 등록 및 관리실태

- 장애인등록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 장애인 등록 현황 (단위:명)

합 계	지체장애	뇌병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442	187	47	48	78	1	22	1
호흡기장애	간 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1	0	0	4	2	23	9	19

- 등록대상: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으며, 전문의 진단결과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한 자
- 등록절차



■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구분	장애연금	장애수당
지원자격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중전 3~6급)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금액	최소 50,000원 ~ 최대 424,810원	60,000원(시설 30,000원)

○ 지원현황

(단위:건,천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장애인 연금	734	186,890	682	188,939	599	173,665	196	59,956
장애수당	594	23,760	611	24,440	646	38,760	210	13,080
장애아동 수당	9	1,550	0	0	0	0	0	0

■ 복지카드 및 통합복지카드(고속도로할인카드 포함)

○ 발급대상

- 복지카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통합복지카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및 보호자

※ 고속도로할인카드 기능 추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의 보호자 및 차량 1대에 한함

○ 발급현황

(단위: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4.
복지카드	45	38	57	14
통합복지카드	36	38	53	11

■ 자동차표지 교부

○ 발급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의 주거를 같이 하며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발급현황

(단위: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4.
합계	17	20	23	6

○ 작성자 : 박지혜(사회9급) ○ 검토자 : 권혜숙(주민복지팀장) ○ 확인자 : 조세원(대흥동장)

중점확인사항	(권인순 위원)
3-1. 실뿌리복지 동행센터 운영실태 및 실적	
3-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3-1. 실뿌리복지 동행센터(舊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실태 및 실적

○ 실뿌리 복지동행센터 운영 실태

- 운영추진체계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 시작: 2016년 7월 ~
- 실뿌리복지 동행센터 운영 시작: 2023년 7월 ~
- 조직체계 개편: 2024년 2월 ~



- 인력운영 현황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복지상담전문관	마을사업담당
6	2	3	1

※ 중복 인력 포함

- 인력배치 현황

정원	행정지원팀		주민복지팀		통합민원팀	
	인력	업무	인력	업무	인력	업무
20	8	예산, 회계, 선거, 수방·제설, 청소, 환경, 운전, 주민자치혁신, 마을공동체조성	7	선별적 복지 (맞춤형급여, 차상위지원), 보편적 복지 (장애인, 노인, 아동, 영유아, 청소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동단위사례관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개발 및 서비스연계, 돌봄SOS센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복지플래너, 복지상담전문관	5	통합민원

※ 방문간호사(2명) 별도

- 주요사업 내용

과 제	구 분	업 무 내 용	
복지·건강 중 심 복 지 전달체계 구 축	복지플래너 및	빈곤·돌봄 위기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기존 복지대상자, 은둔형 취약계층 주민 - 내용: 빈곤·돌봄위기가구 체계적 방문관리, 예방복지 서비스 실현, 가구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사	방문간호 서 비 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건강취약계층 - 내용:(1차) 동 방문간호사 건강 평가 실시 (2차) 복합만성질환: 보건소 집중관리 계속관리: 동 방문간호사 주기적 관리
통 합 서 비 스 제 공	복지상담 전 문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방민원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종합상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타 기관 서비스 필요시 해당 기관 담당자 연계 	
	동 단 위 사 례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단위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당사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여 문제해결에의 주도적인 지원체계 구축 - 동주민센터, 민간기관, 구 지역복지팀 협업 추진 	
복 지 생 태 계 축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 성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소외계층의 상시 발굴 및 이웃이 이웃을 돕는 동 단위 복지 기능 및 인적 안전망 구축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동 특화사업 추진 	
	주민관계망 활 성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주민의 주민관계망 강화 - 인적·물적 복지자원, 서비스 발굴 및 연계 	

○ 실패리복지 동행센터 운영실적

- 복지·건강 중심 복지 전달체계 구축 추진실적
-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

추진기간	추진율(%)	모니터링계획(건)	모니터링실적(건)	서비스연계(건)
2024.4.	100	1,169	1,175	435
2023	100	3,560	3,568	1,650
2022	108	2,563	2,777	1,411
2021	116	2,520	2,931	1,240

※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연계, 후원물품 연계 등

- 방문간호서비스 운영 실적

구분	관리대상 (명)	방문간호서비스(회)				보건복지 연계(건)
		계	직접방문	내소방문	전화방문	
2024.4	716	1,270	499	168	603	79
2023	672	3,625	1,589	363	1,673	517
2022	490	2,590	582	597	1,411	296
2021	543	2,391	399	393	1,599	340

- 통합서비스 제공 추진실적

- 복지상담전문관

추진기간	복지상담건수(건)	긴급지원 등 연계내역(긴급,특생)
2024.4.	750	57건 / 36,523천원
2023	3,003	215건 / 142,114천원
2022	3,256	212건 / 113,179천원
2021	5,262	232건 / 112,551천원

- 동 단위 사례관리

추진기간	사례회의(건)			사례관리(건)			
	소계	내부회의	통합회의	소계	서비스연계	동 사례관리	구 통합사례관리
2024.4.	12	12	-	6	1	4	1
2023	46	45	1	20	6	11	3
2022	49	47	2	15	6	8	1
2021	42	41	1	15	8	6	1

○ 작성자 : 조정현(사회7급) ○ 검토자 : 권혜숙(주민복지팀장) ○ 확인자 : 조세원(대홍동장)

- 복지생태계 구축 추진실적

추진기간	추진내역
202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협의체 특화사업 『대흥이네 행복나눔』 추진(4월~): 총 70가구 지원 예정(5,016천원) · 독거어르신과 함께하는 해피생일상, 영화나들이/우리동네 따뜻한 고시원 - 동 협의체 특화사업 외 복지공동체 사업 추진(5월) · 사랑의 짜장면 나눔행사: 취약계층 107가구 -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참여자 2명/취약계층 안부확인 활동(1,092건) - 복지위기가구 발굴사업을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21명, 복지위기가구 발굴 3건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협의체 특화사업 『대흥이네 온(溫)택트』 추진: 총 80명 지원(4,883천원) · 효도생일상(저소득 독거어르신 60가구), 꿈나무 면역키트(저소득 초중생 20가구) - 동 협의체 특화사업 외 복지공동체 사업 추진 · 대흥이네 김장김치 나눔행사: 취약계층 162가구, 경로당 5개소 -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춤추이음단』 추진: 참여자 17명 · 고독사 위험 128가구/ 죽 전달 및 안부확인 진행 -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참여자 2명/취약계층 안부확인 활동(3,970건)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23명, 복지위기가구 발굴 23건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종교협의회 지원사업 추진 ·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3회, 위기가구 방문 55가구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협의체 특화사업 『대흥이네 온(溫)택트』 추진: 총 69가구 지원(2,765천원) · 고시원 거주 가구 침구세트 전달, 신규 복지책정자 및 전입가구 방문 및 주방용품 전달 등 - 동 협의체 특화사업 외 복지공동체 사업 추진 · 대흥이네 김장김치 나눔행사: 취약계층 154가구, 경로당 5개소 -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이웃살피미』 추진: 참여자 17명 · 취약계층 130가구/ 김치전달 및 모니터링 ※2022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이웃살피미 인적 정비(중복참여 지양) -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참여자 2명/취약계층 안부확인 활동(1,450건)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22명, 복지위기가구 발굴 14건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종교협의회 지원사업 추진 ·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5회, 위기가구 방문 67가구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협의체 특화사업 『대흥이네 온(溫)택트』 추진: 총 222가구 지원(3,985천원) · 고시원 거주 가구 침구세트 전달, 신규 복지책정자 및 전입가구 방문 및 주방용품 전달 등 - 동 협의체 특화사업 외 복지공동체 사업 추진 · 대흥이네 김장김치 나눔행사: 취약계층 200가구 -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이웃살피미』 추진: 참여자 49명 · 취약계층 200가구/ 김치전달 및 모니터링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47명, 복지위기가구 발굴 50건

○ 작성자 : 명지현(사회7급) ○ 검토자 : 권혜숙(주민복지팀장) ○ 확인자 : 조세원(대흥동장)

3-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태

- 최초구성일: 2014. 11. 11.
-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7조
- 조직체계: 공동위원장(공공, 민간) 2명, 위원 16명
- 구성현황

합계	공무원	복지기관 종사자	복지 통장	직능단체 위원	자원봉사 단체회원	종교인	교육복지 관계자	자영업자	기타 지역주민
18	1	1	1	3	1	2	4	3	2

- 협의체 역할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고독사 위험 가구 포함)
 - 복지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시행
- 운영실적

추진기간	회의 교육	특화사업	
2024.4.	1회	추진기간	2024. 4월 ~ 2024. 12월(예정)
		추진내용 (3개사업)	『대흥이네 행복나눔』 - 독거어르신과 함께하는 해피생일상/총 2회, 40가구 - 독거어르신과 함께하는 영화나들이/총 2회, 15가구 - 고시원 거주가구 음식키트 지원/총 4회, 15가구
		소요예산	5,016,000원
2023	6회	추진기간	2023. 4월 ~ 2023. 12월
		추진내용 (2개사업)	『대흥이네 온(溫)택트』 - 저소득 독거노인 효도생일상/총 3회, 60가구 - 저소득 초중생 면역키트(영양제, 써리얼 등)/총 4회, 20가구
		소요예산	4,595,080원
2022	2회	추진기간	2022. 5월 ~ 2022. 12월
		추진내용 (2개사업)	『대흥이네 온(溫)택트』 - 고시원 거주 가구 침구세트 지원/총 8회, 17가구 - 신규 복지책정자·전입가구 방문 및 주방용품 전달/ 총 8회, 52가구
		소요예산	2,765,000원
2021	2회	추진기간	2021. 4월 ~ 2021. 12월
		추진내용 (2개사업)	『대흥이네 온(溫)택트』 - 고시원 거주 가구 침구세트 지원/총 9회, 111명 - 신규 복지책정자·전입가구 방문 및 주방용품 전달/ 총 9회, 111가구
		소요예산	3,984,700원

○ 작성자 : 명지현(사회7급) ○ 검토자 : 권혜숙(주민복지팀장) ○ 확인자 : 조세원(대흥동장)

중점확인사항

(김승수 위원)

- 4-1. 기초연금 지급관리
 - 지급기준 및 접수실태
 -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 4-2. 저소득주민(독거노인 포함) 방문행정
- 4-3. 7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

4-1. 기초연금 지급관리

○ 기초연금제도 개요

- 근거: 기초연금법
- 목적: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대상자: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선정기준액('24년): 단독가구(2,130,000원)/부부가구(3,408,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재산-공제액-부채)×4%/12개월]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공적연금, 재산소득 등
- 기본재산액 공제: 일반재산(대도시 1억3천5백만원), 금융재산(2천만원)

- 지급금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구간별 차등지급

- 노인단독 또는 노인부부 중 1인 수급: 최저 33,480원/ 최고 334,810원
- 노인부부 동시수급: 최저 각각 33,480원 / 최고 각각 267,850원(20%감액)

※ '24년부터 단독 가구 월 최대 334,810원, 부부 2인 가구 월 최대 535,680원 지급

○ 기초연금 신청 및 책정현황

(단위:명)

추진기간	65세 이상	신청자	책정자	책정제외
2024.4.	1,982	43	36	7
2023	1,965	122	84	38
2022	1,954	141	76	65
2021	2,056	125	93	32

○ 기초연금 지원현황

추진기간	대상자(가구/명)	지급건수(건)	지원금액(천원)
2024.4.	871/1,040	3,044	932,578
2023	993/1,350	11,911	3,527,979
2022	1,000/1,356	11,988	3,401,686
2021	995/1.354	11,942	3,296,405

※ 관내 전체 노인인구 (1,982명/'24.4.30.기준) 대비 기초연금 수급률 52.5%

○ 작성자 : 박지혜(사회9급) ○ 검토자 : 권혜숙(주민복지팀장) ○ 확인자 : 조세원(대흥동장)

4-2. 저소득주민(독거노인 포함) 방문행정

- 방문행정(모니터링) 추진체계(동주민센터)
 - 개별 복지대상자에 대한 모니터 계획수립(행복e음, 모니터주기 등)
 - 대상자 모니터 상담후 행복e음 상담결과 등록
- 대상가구 현황: 총 480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위기도 분류표

구분	위기도	주기	내 용
고립 위기 단계 (상시안부확인)		격주 1회	- 고립 위험군 중 '고·중·저위험'가구 ※ 타 복지서비스와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위기단계"로 관리 ※ 주 2회는 마포안심똑똑, 우돌단에 의한 안부확인 / 월 1회는 방문상담
고립 위험 군외 가구	1단계	월 1회	- 일상생활관련 욕구와 자발적 문제해결 능력 관련 욕구를 복합적으로 가진 가구 - 정신장애인가구, 해체위기가구, 조손가구등 개별서비스 연계 외에 상담,치료,생활관리 등 서비스 통한 기능회복 필요 가구 - 장애·노인·질병 1인가구 중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 2인가구 중 1인이 장애 또는 질병으로 기본생활이 어려운 가구 - 통반장 등에 의해 위기상황으로 신고된 가구 등 -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우울 등)이 의심되며 주의가 필요한 가구
	2단계	분기 1회	- 외부 사회서비스 지원중인 가구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방문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등)
	3단계	반기 1회	-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순한 욕구를 가진 가구 (단순서비스 가구: 금품 후원, 급식지원, 집수리 등)
	4단계	연 1회	- 공공부조 및 법정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이 가능한 가구 (현 보장내용 외 기타 다른 욕구가 없거나 잠재된 가구) - 장기입원 등으로 사례관리 추진이 불가능한 가구

○ 모니터링 대상자 현황 (단위:명)

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480	412	58	10

○ 모니터링 추진실적 (단위:건)

계	2024.4	2023	2022	2021
10,451	1,175	3,568	2,777	2,931

○ [독거노인] 모니터링 추진실적 (단위:명,건)

추진기간	인원	추진실적
2024.4.	215	713
2023	225	2,239
2022	230	2,553
2021	203	1,575

4-4. 7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2024. 4. 30.현재)

○ 75세 이상 노인 인구 현황

(단위:명)

연령	총계	75-84세	85-94세	95세 이상
인구수	913	677	222	14

○ 75세 이상 독거노인 인구 현황

(단위:명)

연령	총계	75-84세	85-94세	95세 이상
인구수	322	222	97	3

※ 독거노인 비율: 35.2%

○ 작성자 : 조정현(사회 7급) ○ 검토자 : 권혜숙(주민복지팀장) ○ 확인자 : 조세원(대흥동장)

중점확인사항	(백남환 위원)
5-1. 돌봄SOS사업 운영 실적	
5-2. 긴급복지 지원실태	

5-1. 돌봄SOS사업 운영실적 (2019.7월부터 시행)

- 사업대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중장년 가구(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지원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전액 지원
- 사업내용: 독립적 일상생활에 수행이 어렵고 불가피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주민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류 (1인 연간 지원한도 금액: 1,600천원)

서비스명		내 용	서비스 한도 (연간)
일시재가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60시간
일 상 편 의	식사지원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도시락 배달	30식
	동행지원	필수적인 외출활동 지원 (병원내원 동행 등)	12회
	주거편의	가정 내 간단한 수라보수 지원 (빙충망, 안전 바 설치 등)	재료비 15만원
	단기시설	당사자의 단기간 시설 입소	14일

※ 일시재가서비스, 동행지원서비스, 주거편의서비스 이용 시 교통비 연 12만원까지 지원

○ 운영실적

(단위:가구,건)

추진기간	지원가구(중복제외)				서비스유형					
	소계	수급자/차상위	중위소득 100%이하	일반 가구	소계	일시재가	단기시설	식사지원	이동지원	주거편의
2024.4.	26	22	4	0	42	7	-	8	21	6
2023	105	77	28	0	208	24	-	64	73	47
2022	69	56	12	1	172	23	-	42	63	44
2021	123	97	25	1	160	23	-	72	5	60

○ 작성자 : 조현희(사회9급) ○ 검토자 : 권혜숙(주민복지팀장) ○ 확인자 : 조세원(대흥동장)

5-2. 긴급복지 지원실태

- 지원근거: 긴급복지 지원법
- 지원대상: 위기상황과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가형 긴급복지**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75%이하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 재산기준: 2억4천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 금융기준: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26호,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이혼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 ▷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 서울형 긴급복지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00%이하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 재산기준: 4억9백만원 이하
- 금융기준: 1,000만원 이하

○ 긴급복지 지원현황

(단위:건,원)

구 분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4.4.	29	21,650,520	16	11,602,900
2023	147	107,250,360	35	24,859,060
2022	111	65,816,490	71	35,402,390
2021	117	66,726,140	62	32,221,310

○ 작성자 : 조정현(사회7급) ○ 검토자 : 권혜숙(주민복지팀장) ○ 확인자 : 조세원(대흥동장)

중점확인사항

(오욕자 위원)

- 6-1. 자활근로사업 운영실태
- 6-2.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6-1. 자활근로사업 운영실태

-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 및 시행령 제20조, 제25조, 제26조
- 사업목적: 근로역량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 빈곤지원과 자활 사업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수 있는 기능습득 및 근로기회 제공
- 참여대상: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등
- 자활근로사업 유형

구 분			실시기관
고용노동부자활사업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자활 근로	Gateway과정	마포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동주민센터

- 사업유형별 근로기준 및 내용 (단위:천원)

구분	대상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월평균 근로일수	주5일 (1일8시간)		주5일 (1일5시간)
근로 임금 (월기준 표준소득)	지급액	61,930	54,200	31,800
	단가	57,930	50,200	27,800
	실비	4,000	4,000	4,000
	표준소득액	1,506,180	1,305,200	722,800
내용		간병, 교육보조원, 청소, 요식업 등		환경정비

- 동 주민센터 자활근로 추진실적 (단위:명,천원)

구분	참여대상자 현황		지급액
	근로유지형	도우미형	
2024.4.	3	-	6,643
2023	3	1	29,221
2022	-	1	18,771
2021	-	1	16,885

○ 작성자 : 박귀애(사회8급) ○ 검토자 : 권혜숙(주민복지팀장) ○ 확인자 : 조세원(대흥동장)

6-2. 노인일자리 및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현황

- 거리환경지킴이(동 노인일자리) 사업 개요
 - 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절차: 운영계획(구, 동) → 접수(동) → 활동관리(동)
 - 내용

사업명	거리환경지킴이	마을노노케어(마을환경지킴이)
유 형	공익활동형	
대 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선 발	구(어르신동행과)에서 소득인정액, 세대구성, 활동역량 등을 토대로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의거 선정	
내 용	뒷골목청소, 무단투기 제도, 홍보 등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경증치매노인 등 취약노인의 안부확인 말벗, 생활상태 점검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등 참여자 제외
 ※ 2021.6월부터 '마을노노케어'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마을환경지킴이'로 전환되었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22년부터 사업 운영 중지됨

- 추진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4.
사업기간	2021.1.11. ~11.30.	2022.1.10. ~12.9.	2023.1.9. ~12.8.	2024.1.18. ~4.30.
사업유형	거리환경지킴이, 마을노노케어 (마을환경지킴이)	거리환경지킴이	거리환경지킴이	거리환경지킴이
수행기관	동 주민센터: 구 직영 7개 동(공덕~신수동) 마포시니어클럽: 9개 동(서강~상암동)			
활 동 비	만근 시 월 27만원			만근 시 월 29만원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활동시간	월 30시간(일 3시간, 월 10회) *혹서기는 근무시간대 조정			
배정인원	26명 (거리환경 20명/ 노노케어 6명)	26명	20명	20명

- 근무 현황

- 근무일은 날씨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 안전교육 6시간 이상(필수)을 포함하여 활동교육 연간 12시간 이상 실시
- 거리환경지킴이는 팀장을 선임하여 청소구역별 안전 및 관리 역할

○ 우리동네 환경보안관 사업 개요

- 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절차: 운영계획(구, 동) → 접수(수행기관) → 활동관리(동)
- 내용

사업명	우리동네 환경보안관	
유형	사회서비스형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선발	수행기관(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의거 선정	
내용	동 환경 취약지역 중심으로 환경보안관 활동	
	- 에코리더(커피찌꺼기 수거 등) - 녹색정비(틈새녹지조성 및 경관 개선)	- 클린마포(무단투기 상습구역 순찰·계도) - 안심마포(안전 취약지 고 순찰)

※ 2023. 2부터 사업시작

- 추진 현황

구분	2023	2024.4.
사업기간	2023.2.1.~ 11.30.	2024.2.1.~ 11.30.
수행기관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9개 동(공덕~서교동) 마포시니어클럽: 7개 동(합정~상암동)	
활동비	월 712,800원	월 761,040원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활동시간	월 60시간(주 5일, 일 3시간)	
배정인원	4명	4명

- 기관별 역할

구청(어르신동행과)	동주민센터	수행기관
- 동별 건의사항 수렴 - 활동 및 실적 관리 - 주기적인 활동 모니터링 - 보조금 교부	- 취약지역 선정 - 직무계획 수립 - 출근부 확인 및 수합·제출 - 동별 직무교육 수시 운영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참여자 필수교육 실시 - 참여자 근무관리 및 임금지급 - 월별 활동 모니터링

- 근무 현황

- 날씨 등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우천 시 실내활동)
- 안전교육(6시간), 소양교육(5시간), 직무교육(6시간) 총 17시간 이상 의무교육 실시
- 2인 1조로 활동

○ 작성자 : 박지혜(사회9급) ○ 검토자 : 권혜숙(통합민원팀장) ○ 확인자 : 조세원(대흥동장)

중점확인사항 (장정희 위원)
 7-1. 주거복지 추진실태
 - 임대주택, 집수리사업, 주택바우처 등
 7-2. 경로당 관리 현황

7-1. 주거복지 추진실태

○ 사업개요

구분		대상	내용
주택 지원	전세 임대	- 생계·의료 수급자 -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저소득가구 대상	사업시행자(LH,SH)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매입 임대		사업시행자(LH,SH)가 기존의 다카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시중전세가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영구 임대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수시 임대		고시원, 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 또는 주거지원의 시급성이 인정, 긴급지원 가구에 즉시 지원하는 전세 및 매입임대
집수리 지원	희망의 집수리	저소득가구	도배, 장판, 방수, 싱크대 교체 등 집수리 지원
	에너지 효율개선	저소득가구	단열·창호 지원,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보급
주거비 지원	주택 바우처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월세 일부 지급 (1인가구 8만원, 2인가구 8만5천원 지급)

○ 추진실적

추진 기간	주택 지원(신청/선정 건수)					집수리 지원(건)		주택바우처 (가구/천원)
	총계	전세	매입	영구	수시	희망의 집수리	에너지 효율개선	
2024.4.	77/미정	39/미정	19/미정	-	19/19	1	1	32/2,740
2023	158/60	20/4	26/6	65/3	47/47	1	11	104/9,010
2022	148/63	60/25	42/10	20/2	26/26	1	7	149/12,755
2021	171/88	43/26	28/9	56/9	44/44	1	19	206/17,005

※2024년도 전세·매입 임대주택은 심사 중으로 결과 미정

○ 작성자 : 이해은(사회9급) ○ 검토자 : 권혜숙(주민복지팀장) ○ 확인자 : 조세원(대흥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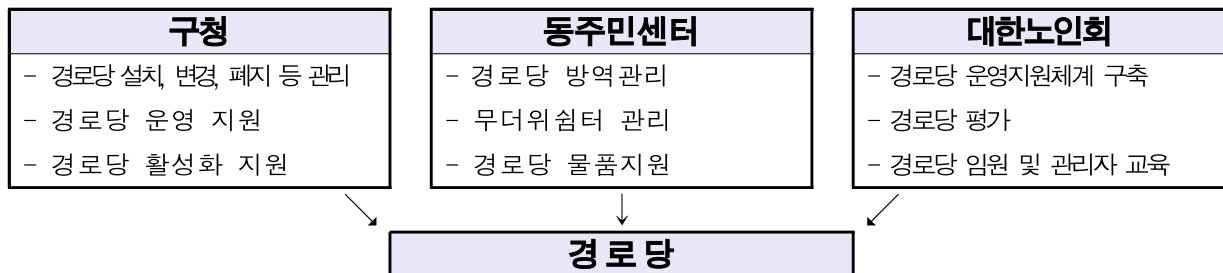
7-2. 경로당 관리 현황

- 추진근거: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47조(비용의 보조)
- 사업목적: 노인의 여가선용과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 및 사회 참여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이용을 독려
- 참여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관내 경로당 현황

구분	경로당명	주소	등록 회원수	방문인원 (평균)	중식(※)	관리구분	면적(m ²)
1	노고산경로당	마포구 고산길 38-4 (노고산동)	21	18	○	구립	80.8
2	대흥중앙경로당	마포구 대흥로18길 11 (대흥동)	25	8	X	구립	60
3	대경경로당	마포구 백범로18길 26 (대흥동)	33	20	○	구립	49.5
4	마포자이2차아파트 경로당	마포구 서강대길 40 (대흥동)	35	15	○	사립	127.19
5	신촌그랑자이 경로당	마포구 대흥로 175 (대흥동)	50	20	X	사립	302

※ 중식: ○ (주2회 식사)

○ 경로당 관리체계



○ 동주민센터 경로당 운영실적

구분	2021	2022	2023	2024.4.
경로당 방역관리	·방역관리 실태점검	·방역관리 실태점검	·방역관리 실태점검	·방역관리 실태점검
무더위쉼터 관리	·무더위쉼터 현장점검 ·쿨도시, 쿨스킵프 4박스 배부	·무더위쉼터 현장점검 ·구급함 5개 배부	·무더위쉼터 현장점검 ·구급함 5개 배부	무더위쉼터 사전점검
경로당 물품지원	·마스크 1400개 배부 ·소독제 및 방역물품 4박스 배부	·양곡20kg 10개	·김치 25박스 ·양곡20kg 10개	-

○ 작성자 : 조현희(사회9급) ○ 검토자 : 권혜숙(주민복지팀장) ○ 확인자 : 조세원(대흥동장)

중점확인사항

(차해영 위원)

- 8-1. 보육료,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신청·지급현황
- 8-2. 저소득주민 이웃돕기 결연사업
- 8-3.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지원 실적

8-1. 보육료,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신청·지급현황

■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지급현황

□ 사업개요

- 법적근거: 부모급여 및 보육료 선정기준 지침
- 지급기준
 - 양육수당

2022.1.1. 출생 전

2022.1.1. 출생 후

구분	연령	지원단가
양육수당	0~11개월	200,000
	12~23개월	150,000
	24~취학년도 2월까지	100,000

구분	연령	지원단가
부모급여	0~11개월	1,000,000
	12~23개월	500,000
양육수당	24~취학년도 2월까지	100,000

○ 보육료 지원 단가

(단위:원)

자격구분	지원대상	연령	정부지원단가	비고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만0세	540,000	바우처 지급
		만1세	475,000	
		만2세	394,000	
		만3-5세	280,000	

□ 추진실적

(단위:명)

추진기간	계	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
2024.4.	87	15	24	48
2023	151	23	56	72
2022	187	53	52	82
2021	170	94	-	76

■ 출산축하금 신청·지급 현황(2021.12. 사업폐지)

□ 사업개요

-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지급대상: 2011. 1. 1. ~ 2021. 12. 31. 이전 출생아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금액

대상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지급액	10만원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추진 실적

(단위:건,원)

구분	2021
신청건수	64
지원금액	24,200,000

■ 장애인 가정 출산축하금 신청·지급 현황

주체	구분 사업명 및 예산	지원대상 및 금액		비고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국비50:시비50)	등록장애인 120만원	-	부부 모두 등록장애인일 경우 1가지만 신청 가능
서울특별시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지원 (시비100)	-	등록장애인 120만원	
마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구비100)	등록장애인 150만원	심한장애: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00만원	마포구 6개월 이상 거주자

※ 중복지원 가능

□ 추진 실적

단위:건,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4.
신청건수	3	1	1	1
지원금액	6,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 첫만남이용권 신청·지급 현황

-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항~제6항
- 대상: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지원금액: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
- 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추진 실적

(단위:건,원)

구분	2022	2023	2024.4.
신청건수	57	54	24
지원금액	108,000,000	106,000,000	55,000,000

○ 작성자 : 이해은(사회9급) ○ 검토자 : 권혜숙(세무6급) ○ 확인자 : 조세원(대흥동장)

8-2. 저소득주민 이웃돕기 결연사업

○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 모금현황

추진기간	구분	모금횟수(건)	모금액(원)
2023.11.15. ~ 2024.2.14.	성금	23	22,497,010
	온누리상품권	1	525,000
	성품	10	23,183,500
소계		34	46,205,510
2022.11.15. ~ 2023.2.14.	성금	45	30,897,990
	성품	13	27,676,695
소계		58	58,574,685
2021.11.15. ~ 2022.2.14.	성금	64	26,300,880
	성품 (가중치 50%적용)	11	16,170,895
소계		75	42,471,775
2020.11.16. ~ 2021.2.15.	성금	37	22,708,860
	성품 (가중치 50%적용)	16	13,986,802
소계		53	36,695,662

- 지원현황

추진기간	성금품	지원세대	지원금(환가액)(원)
2023.11.15. ~ 2024.2.14.	백미	45	1,466,500
	김치	224	17,908,480
	기타(생필품, 떡국떡 등)	226	3,808,520
	온누리상품권	10	525,000
소계		505	23,708,500
2022.11.15. ~ 2023.2.14.	백미	175	5,017,590
	김치	220	15,155,460
	기타(이불, 잡곡 등)	287	7,503,645
소계		682	27,676,695
2021.11.15. ~ 2022.2.14.	백미	160	2,216,000
	김치	262	10,587,800
	기타(라면, 식료품 등)	276	3,367,095
소계		698	16,170,895
2020.11.16. ~ 2021.2.15.	백미	31	739,500
	김치	302	9,570,800
	기타(생필품 등)	709	3,676,502
소계		1,042	13,986,802

○ 연중 이웃돕기 지원 및 후원현황(따뜻한겨울나기 기간 및 정기후원 제외)

추진기간	후원금품내용	지원세대	지원금(원)
2024.4.	김치	50	1,234,500
	밀반찬	26	232,000
소계		76	1,466,500
2023	백미	107	3,343,620
	밀반찬	364	6,997,320
	기타(떡 등)	243	2,346,250
소계		714	12,687,190
2022	밀반찬	182	3,780,280
	기타(삼계탕 등)	236	1,510,000
	현금	1	200,000
소계		445	5,490,280
2021	김치	76	401,080
	밀반찬	104	1,488,280
	현금	3	3,310,000
소계		183	5,199,360

○ 정기후원 현황 (2024.4.30. 현재)

후원자수	대상자수	월 후원금액	후원대상
3명	4명	210,000원	아동, 청소년, 저소득

○ 작성자 : 명지현(사회7급) ○ 검토자 : 권혜숙(주민복지팀장) ○ 확인자 : 조세원(대흥동장)

8-3.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지원 실적

- 지원근거: 마포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
- 사업개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공공요금 체납분을 지원하여 구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
- 지원대상: 마포구 저소득 주민 중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및 실직 등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단위: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4년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중위소득 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5,960,495

- 재산기준: 1억3천5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지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에 해당하는 금액
 - 체납액: 최대 50만원 한도

(단위: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비 및 의료비	334,000	552,000	707,000	859,000	1,004,000	1,143,000	1,277,000
건강보험료·공공요금 체납액	건강보험료, 전기, 수도, 가스요금 / 최대 50만원 한도						

- 특별생계비 지원 실적

(단위:건,원)

추진기간	생계비 및 의료비		건강보험료·공공요금 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4.4.	12	4,269,480	2	1,000,000
2023	28	8,882,000	7	1,808,490
2022	26	8,972,310	10	4,282,260
2021	17	5,360,000	14	4,677,200

○ 작성자 : 조정현(사회7급) ○ 검토자 : 관혜숙(주민복지팀장) ○ 확인자 : 조세원(대흥동장)

중점확인사항 (한선미 위원)

9-1. 사례관리 진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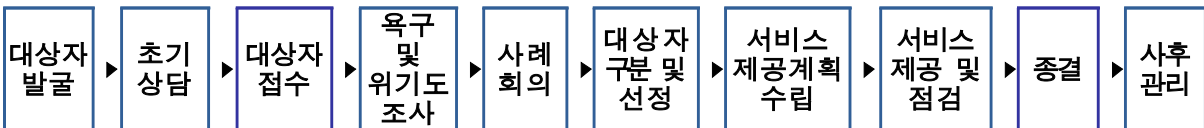
9-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한부모 신청·접수 추진실태

9-1. 사례관리 진행현황

□ 사례관리 추진 개요

-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
- 지원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 빈곤예방 등 지원 가능 가구
- 대상 구분: 위기도 및 욕구조사 실시 후 사례회의를 거쳐 구분
 - 서비스연계 가구: 단편적 욕구로 1개월 미만의 단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
 - 동사례관리 가구: 복합적 서비스 제공 및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
 - 구 통합사례관리 가구: 위기상황으로 구청 지역복지팀의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

○ 추진절차



○ 사례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단위:명)

계	동주민센터	구	복지기관
12	7	2	3

□ 사례관리 추진 실적

○ 동 사례관리 추진실적 (단위:건)

추진기간	사례회의			사례관리			
	소계	내부회의	통합회의	소계	서비스연계	동 사례관리	구 통합사례관리
2024.4.	12	12	-	4	-	3	1
2023	46	45	1	20	6	11	3
2022	49	47	2	15	6	8	1
2021	42	41	1	15	8	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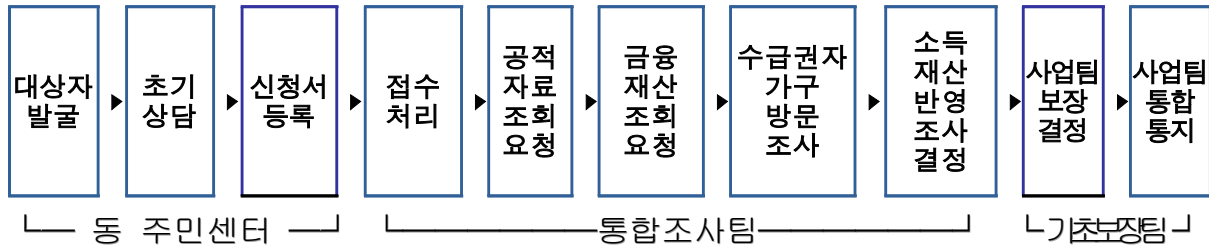
○ 동 사례사업비 집행 실적 (단위:천원)

추진기간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	집행	예산	집행
2024.4.	4,000	-	5,200	-
2023	3,938	3,938	5,230	5,230
2022	3,773	3,773	4,200	4,200
2021	3,773	3,773	3,000	3,000

○ 작성자 : 조정현(사회7급) ○ 검토자 : 권혜숙(주민복지팀장) ○ 확인자 : 조세원(대흥동장)

9-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신청·접수 추진실태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급여의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신청
 -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 신청 구비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재산신고서, 주거관련서류,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업무 처리 절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및 책정현황

(단위:가구)

추진기간	신청	책정
2024.4.	71	36
2023	293	136
2022	207	132
2021	351	230

※ 차상위 및 한부모 신청의 경우, 통합조사팀에서 조사 시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

- 차상위·한부모가족 신청 및 책정현황

(단위:가구)

추진기간	신청	책정
2024.4.	13	3
2023	52	29
2022	19	13
2021	24	7

※ 차상위 및 한부모 신청의 경우, 통합조사팀에서 조사 시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

○작성자: 박귀애(사회8급),이혜은(사회9급) ○검토자: 권혜숙(주민복지팀장) ○확인자: 조세원(대흥동장)

MPO